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□ 고흥군의회 의결 및 공포 내용

○ 의　　결: '22. 7. 28.(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)

○ 이 송 일: '22. 7. 28.

○ 재의요구: '22. 8. 11. 고흥군수

○ 재 의 결: '22. 8. 30.(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)

※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조례로서 확정

○ 이 송 일: '22. 8. 31.

○ 공　　포: '22. 9. 6. 고흥군의회 의장

※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,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고흥군수가 공포하지 아니하여 고흥군의회 의장이 공포함.

○ 공포장소: 고흥군의회 홈페이지(www.council.goheung.go.kr)

2022년　9월　6일

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

고흥군의회 조례 제1호

붙임: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조례 제1호

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

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 “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.” 규정을 삭제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4]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8제4호 관련) ※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. ~ 어. (생략)	**[별표 4]**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8제4호 관련) < 삭제 > 가. ~ 어. (현행과 같음)